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6일 02시 06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사용제한	3

사용제한

2014.04.17 조회수 55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74
담당부서	도시디자인과
상위법령	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
조례	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7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17조(사용제한) ①여수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1.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할 때 2. 시설을 파손할 때 3. 사용료 및 보증금을 1월이상 체납할 때 4. 신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휴업할 때 5.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6.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7.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여수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8.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 이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7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77 >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